

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
자격시험 응시원서(원본)

「수도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.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「수도법」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 년 월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

※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① 응시번호	※								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																			
② 등 급	[] 1급 [] 2급										응시 시험	※ [] 제1차 [] 제2차																		
③ 성 명	(한글)					(한자)					④ 주민등록번호 -																			
⑤ 주 소 (주민등록지)											⑥ 전화 번호	일반전화: () 휴대전화 :																		
⑦ 최종학력	[] 대학원 [] 4년제 대학 [] 2년제 대학 [] 고등학교 [] 기타					전공					[] 재학 [] 졸업 [] 수료					⑧ 실무 경력	담당업무 (년)													
⑨ 국가기술 자격취득	종 목										자격증번호										합격일자									
⑩ 면 제 신 청(해당자만 기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⑪ 시험면제	[] 상하수도기사 [] 수질관리기사 [] 수질환경기사 [] 수질환경산업기사										[] 제1차시험합격					제 () 회 () 급					원서기재내용 접수담당확인									
⑫ 면제 과목	※					※					※					※					⑪									
⑬ 근무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편 철 부 분 ○	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(부분)															사 진 (3.5cm×4.5cm)						
	⑭ 응시번호						⑮ 등 급	[] 1급 [] 2급														
	⑯ 성 명						⑰ 주민등록번호	-														
	⑱ 면제 과목	※					※					※					※					
	⑲ 주 소	※																				
⑳ 전화번호	일반전화: () 휴대전화:										E-mail											

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															사 진 (3.5cm×4.5cm)					
㉑ 응시번호						㉒ 등 급	[] 1급 [] 2급													
㉓ 성 명						㉔ 주민등록번호	-													
㉕ 주 소																				
㉖ 전화번호	일반전화: () 휴대전화:																			
시험일시·장소											년 월 일					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				

응시원서 기재요령

- 이 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.
- 1.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,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- 2. 제출일자: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.
- 3. 성명 ③, ⑯, ㉓: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.
- 4. 주민등록번호 ④, ⑰, ㉔: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5. 주소: ⑤는 주민등록지 ⑰, ㉕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.
- 6. 최종학력 ⑦: 해당란에 ☑표를 하고 전공란에 전공 분야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7. 실무경력 ⑧: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- 8. 면제신청 ⑩: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에 따른 시험면제 또는 과목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해야 합니다.
- 9. 시험면제 ⑪:
 - 제1차 시험 합격자: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등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
 - 상하수도기술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
 - 수질관리기술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·제2호 및 제4호
 - 수질환경기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
- 10. 면제과목 ⑫, ⑱: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43조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적습니다.
- 11. 근무처 ⑬: 근무 중인 사업장명 및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.
- 12. 사진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×4.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.

응시자 유의사항

- 1. 응시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2. 접수된 응시원서·수수료,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3.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때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응시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그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.
- 4. 제1차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, 제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5. 응시자는 시험 시 1) 응시표, 2) 신분증, 3) 검은색 사인펜, 4) 검은색 볼펜, 5) 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(연필 제외)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6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,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7.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수도법」 제24조의2 및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8. 제1차 시험일(제1차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) 현재 「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3 각 등급별 자격요건란 중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.
- 9.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2차 시험 응시 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(큐넷)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·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(합격 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).

제1차 시험 합격 발표일	자격요건 서류제출 및 제2차 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기간
. . .	. . .

10. 그 밖의 안내사항

가. 자격증 발급

- 준비물: 신분증, 증명사진 1장, 발급수수료
- 발급 장소: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

나.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